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8595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8595 판결

부산고등법원 1999. 12. 17 선고 98나13709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김AA

【피고,상고인】 송BA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9. 12. 17. 선고 98나1370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6. 4.경 부산 ○○구 ○○○○동 00-0의 10 지상 8층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면서 건물이 완공되면 그 건물 3층에서 커피숍을 경영하기로 하고, 당시 자신의 딸과 사귀고 있던 피고로부터 “합건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던 소외

장CA을 소개받아 장CA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억 5천만 원, 공사기간을 위 건물의 완성에정일 이후인 1996. 10.부터 1996. 11.까지로 정하여 커피숍 내부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장CA에게 위 계약 당시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1996. 7. 25.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선수금조로 합계 6,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장CA은 이미 1996. 6. 30.자로 당국에 폐업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어 버린 사실, 이에 원고는 1997. 5.경 피고에게 위 계약에 관여한 자로서 책임질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계약의 이행 및 지급된 금원의 반환에 관한 보증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장CA은 원고와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지급받은 금원 중 우선 2,000만 원을 1997. 9.경에, 1,500만 원을 1997. 12.경에 각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장CA의 처인 손D이 또한 이에 보증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나, 그들은 위 약정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장CA의 계약상 의무이행 및 금원반환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 자로서 위 계약의 해제에 따라 장CA이 반환하여야 할 금원 중 이미 반환받은 400만 원을 공제한 5,9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갑 제2호증(확인서)의 기재 등에 터잡아 피고에게 보증책임을 인정한 것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뜻 수긍이 되지 아니한다.

가. 갑 제2호증은 “확인서”라는 표제하에 원고가 장CA과 1억 5,000만 원의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장CA에게 지급한 금원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위의 합건 인테리어사의 사장 장CA과 본인 송BA(피고)의 관계는 이모부와 조카 사이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인테리어 계약을 맺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위와 같이 돈을 보낸 것임, 건물 준공 후에 위의 계약은 해결될 것임”이라고 기재한 다음, “보증인”(보증인 표시는 이름과 상당히 떨어져 있고, 글자의 크기도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별도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쓰고 피고가 서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우선 표제가 각서 또는 보증서 등이 아닌 확인서로 되어 있고, 그 내용 중에도 통상 보증의 경우 사용되는 문언과는 현격히 다르고 또 달리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확인서 말미에 낱설어 보이는 보증인이라는 기재가 있다 하여도 이것만으로 피고가 장C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또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별다른 자력도 없는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원고의 딸과 혼인을 하기로 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장CA과 이 사건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장래 사위가 될 피고에게 위 공사업자의 소개를 잘못된 책임을 물어 그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원고의 딸인 제1심 증인 김EA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결혼을 하려고 할 당시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가 당시 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별다른 자력도 없으면서 거액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다. 그 밖에 피고가 장C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 중 제1심 증인 김EA의 증언은 김EA이 원고의 딸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원심이 위 확인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피고가 장C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왜 보증의 경우와 다른 문면이 기재되었고, 누가, 언제, 피고의 이름 앞에 보증인이라고 기재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좀 더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3.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장CA과 손D이가 원고와 사이에 2,000만 원을 1997. 9. 25.까지, 1,500만 원을 1997. 12.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경개 내지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셈이 되어 종전에 피고가 부담하고 있던 책임은 모두 소멸하였거나, 아니면 피고는 손D이와

함께 공동보증인으로서 분별의 이익에 따라 금원 일부에 대하여서만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사실관계에 비추어 장CA, 손D이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경계나 준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가 손D이와 함께 공동보증인의 지위에서 분별의 이익을 내세울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장CA과 손D이가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경계 또는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계 내지 준소비대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한 개의 가분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보증인들 사이에는 공동보증인으로서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법리는 시기를 달리하는 별개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순차로 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또한 각 보증인의 보증범위가 다른 경우에는 그 공통한 부분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장CA의 처인 손D이가 장C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함과 아울러 피고도 같은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설시도 없이 막연히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동보증인으로서의 분별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보증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그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